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7
----------	------

제출연월일: 2025. 6.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포상금 지급 가능 복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신고대상(안 제3조)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위기가구 범위 규정

라. 신고방법 및 결과통지 조항 신설(안 제4조)

- 신고방법의 명확화

: 방문, 우편,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고 처리결과 신고인 통지

: 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마.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별지 서식)

-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복지대상 선정 범위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 명확화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 제출 및 포상금 지급 기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규정

바.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7조)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범위 명확화 및 지급제외 대상 정비

사. 환수 및 신고자 준수사항(안 제8조 ~ 제9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24182호, 2025. 6. 10.)

라. 입법예고: 2025. 6. 2. ~ 6. 23.(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신고방법 및 결과통지)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최초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자	신고일자:		
	신고대상자:		
	상세 주소:		
포상금	건당 만원		
수령방법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지급제외 대상여부,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규정 사항(신고방법·신고결과 통지·지급신청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복지지원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이 름: 이현정
- 연락처: (052)290-4492